

정세와 투쟁

일하다 죽지않게! 차별받지않게! 김용균 동지 1주기

공공운수노조
교육지 12호

2019.11.27(수)

02-497-7888 서울시 영등포구 대림로 183 www.kptu.net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노동자의 생명안전 외면하는 문재인 정권

3시간마다 1명이 죽고
5분마다 1명이 다치는 현장

**최근 17년간
산재사망 40,217명
재해 1,543,797명**

해마다 2,366명,
하루 7명 산재사망
실제 산재는 12~30배



민주노총

2018년 12월 27일, 故 김용균 동지를 비롯해 수많은 노동자들의 죽음으로 28년 만에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전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하청업체 산업재해에 대한 진짜 사용자인 원청의 책임과 처벌 강화, 화학물질 독성정보 관련 정부 보고와 영업비밀 제한 적용 등 약 60개 조항이 신설되거나 강화됐다고 한다.

그러나 개정안은 원청 사업주의 책임 강화를 '도급인(원청)이 지배·관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장소'로 한정했다는 점에서 제한적 적용이다. 아울러 원청의 책임 범위와 위반 시 처벌 수위 등은 정부 원안에

서 내용이 후퇴했다. 산재 사망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사업주 대한 가중 처벌은 도입된 반면, 형사 처분 하한 규정이 도입되지 않아 솜방망이 처벌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

‘안전 때문에 눈물짓는 국민이 단 한명도 없게 하겠다’ 던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은 휴지조각이 되었다

지난 4월22일 노동부가 공개한 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 전부 개정안은 대부분 전면개정안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28년만의 법 개정, 위험 외주화 금지로 산재 사망 감소 등 정부가 강조하고 약속한 내용은 온데 간데 없다. 산안법 개정 과정에서 이미 자본, 수구야당, 경제부처의 흔들기로 만신창이가 된 법이 하위령에서 더욱 후퇴했다. 위험의 외주화 금지·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등 수많은 약속을 했지만 무엇 하나 지켜지지 않았다.

지난 10년간 2만명 이상의 노동자가 죽었다(노동부 통계) 사고사로만 하루 평균 3명씩 사망

하지만 1심에서 금고 징역형 처벌 건은 0.57%, 2심에서 징역형 선고는 단 여섯 건에 불과했다. 노동자 1명의 죽음에 기업들은 450만원 벌금으로 그 책임을 면하고 있다.

그런데도 정부는 오히려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 및 특별연장근로 확대 ▲산업안전보건법의 누더기 개정 ▲중대재해 시 고용노동부 작업중지 지침 개악 ▲유해물질, 작업환경에 대한 노동자 알 권리 차단 등 노동자의 생명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각종 제도 개악을 밀어붙이고 있다.

24살 청년 발전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의 죽음

2018년 12월 11일 새벽 3시, 홀로 석탄 운반용 컨베이어 벨트를 점검하던 24살 청년이 벨트에 끼어 사망했다. 첫 직장 입사 2개월 반 만에 싸늘한 주검이 된 24살의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 고 김용균의 죽음은 ‘더 이상 위험의 외주화를 방치할 수 없다’는 사회적 공분을 일으켰다.

100여개가 넘는 단체들이 참여하여 고 김용균 시민대책위원회를 구성하였고 진상규명-책임자 처벌, 위험의 외주화 중단, 발전소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62일간 투쟁을 전개했다. 전국에 추모분향소가 설치됐고 주말마다 범국민추모제를 진행했다.

공공운수노조와 연대단위의 투쟁을 통해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안 통과 △진상규명을

위한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 설치 △발전소 연료환경설비운전 정규직 전환, 경상정비 정규직 전환 논의를 위한 노사전 협의체 구성에 합의했으며, 원청인 한국서부발전이 고 김용균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도록 합의했다. 특조위에서 조사한 결과 아래와 같은 대표적 문제가 있었다.

■ 1급 발암물질을 흡입하는 발전노동자들

조사결과에 따르면 발전소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1급 발암물질인 결정형 유리규산, 비소, 벤젠, 카드뮴을 흡입하며 일하고 있다는 점이 밝혀졌다. 회처리장의 경우 결정형 유리규산이 0.408mg/m³가 검출되었는데 이는 0.05mg/m³(한국 노동부 노출기준), 0.025mg/m³(미국 산업위생가협회 노출기준)보다 각각 8배, 16배를 초과한 수치다. 옥내저탄장은 빈번한 자연발화로 인하여 일산화탄소 농도가 500PPM이 검출되기도 했다. 200PPM 농도는 사람이 쓰러질 수 있는 농도이고, 평상시 작업기준인 30PPM이 넘는 측정치가 38.5%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암물질에 대한 작업환경을 측정조차 제대로 하지 않아 왔다는 것이 드러났다.

■ 원하청 관계가 산업재해 은폐

노동자가 일하는 현장의 위험이 방치된 채, 산업재해가 여전히 은폐되고 있다는 현실도 확인되었다. 김용균 사고 이후에도 회사의 압력에 산재처리를 하지 못한 건수가 6건이 특조위로 제보되었다는 사실도 충격이다.

특히, 작업관련 손상요인에서 원하청 관계가 손상을 일으키는 주요요인임이 확인되었다. 타사 관리자 업무지시가 손상을 2배로 늘리고, 원하청 구조라는 것만으로도 0.28배 늘어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회사가 강조했던 노동자의 불안전 행동의 0.17배보다 더 영향을 주고 있었다. 이는 노동자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라도 직접고용이 필요하다는 점이 증명된 명확한 결과다.

■ 도급비는 증가해도, 늘어나는 노무비 착복률

또한, 위험의 외주화 지적을 받으면서까지 간접고용 노동자의 직접고용을 거부하는 발전사와 산업통상자원부가 금과옥조로 여기던 발전산업 경쟁체제의 민낯도 그 실체를 드러냈다. 발전소 운영비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석탄을 발전5사가 경쟁하느라 비싸게 구매했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발전사가 지급하는 도급비는 계속 증가해지만 노동자가 아닌 탐욕스러운 하청회사의 입 안으로 털어 넣은 것 역시 드러났다. 상장사들의 평균 이익율은 6%일 때 협력사들의 평균 이익률이 15% 였다. 이는 발전사와 협력사 간에 계약으로 맺은 직접노무비가 노동자에게 지급되지 않고 중간에 착복된 임금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노무비 착복률. 경상정비 47~61%, 계획예방정비에 75~91%)

2000년대 초반부터 발전회사를 분할하고, 정비물량을 민간회사에 역지로 넘기기 시작하고 2013년 발전정비산업 민간경쟁체제를 만들었던 발전사와 산업통상자원부의 민영화, 외주화 정책은 모두 실패했다는 증거다.

■ 죽음에도 존재하는 신분 차별

신분에 의한 차별				
재난안전관리	평가대상	건설사업소	중부발전 내부 경영실적 평가 지표	
사회적 가치 창출 확대	배 점	12점		
분기	경쟁지표	안전 및 환경		
건. 인원	지표유형	계량		
책임경영	BSC	내부 프로세스		
재난안전관리 역량 강화로 재난안전사고 예방 및 경영손실 최소화				
신분별 감점계수				
구분	사망	부상	질병	비고
직장일반인	12.0 (3.0*)	2.0	0.5	산업안전보건법 2조1항의 산업재해로 인하여 산재요양 신청대상인 사업장무재해 운동 시행규칙 제2조(호외 가)사정 제외)
도급인	4.0(1.0*)	1(0.5*)	-	
○ A : 재해정도별 감점계수 - 직 원 (사망 : 1.50 중대재해 : 1.00 경상 : 0.15) - 도급자 (사망 : 1.00 중대재해 : 0.70 경상 : 0.10) - 건설사업장 도급자(사망 : 0.20 중대재해 : 0.15 경상 : 0.02) * 중대재해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조(호외 가)사정 제외				
				서부발전 내부 경영실적 평가 지표

중부발전의 내부 경영실적 평가 지표를 보면 ‘신분별 감점계수’라는 부분이 나온다. 원청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사망했을 때 감점은 12점이지만 하청 노동자가 사망하면 감점은 4점이다.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의 ‘목숨값’이 더 낮게 책정돼 있는 것이다. 고 김용균씨의 원청인 서부발전 역시 다르지 않았습니다.

서부발전의 내부 경영실적 평가 지표를 보면 재해정도별 감점계수라는 대목이 나온다. 원청 노동자가 산재 사망 시 감점 계수는 1.5이다. 반면 하청 노동자가 산재 사망 시 감점 계수는 1이다.

발전사의 이런 신분 차별은 ‘위험의 외주화’로 이어졌다. 발전사에서 2014~2018년 5년간 일하다 다치거나 죽은 사람의 수는 371명이었다. 재해자는 원청 소속이 26명이었고 하청 협력사 소속이 345명이었다. 사망자 21명은 모두 하청 소속이었다. 하청 노동자는 원청인 발전사 소속 노동자들보다 작업 중 최대 8.9배 더 많은 사고와 중독 위험에 노출된 것으로 조사됐다.

고 김용균 특조위 결론! 발전비정규직 직접 고용해라

고 김용균 특조위는 위의 내용을 포함해서 아래의 22가지 권고사항을 발표했다.

■ 고 김용균 동지 특조위 권고사항

구조, 고용, 인권분야

- 권고1. 노동안전을 위한 연료·환경설비 운전 및 경상정비 노동자 직접고용 정규직화
- 권고2. 노무비 착복 금지와 입찰제도 개선
- 권고3. 노동안전을 위한 필요인력 충원
- 권고4. 안전보건 관련 집단적 노사관계 개선
- 권고5. 노동자의 안전에 관한 실질적인 권리 강화
- 권고6. 산업재해 징벌적 감점 지표 개선
- 권고7. 노동안전과 국민의 편익 향상을 위한 민영화·외주화 철회
- 권고8. 노동자 안전 강화와 국민의 편익 향상을 위한 전력산업 재편

안전, 보건, 기술 분야

- 권고9. 사업주의 분명한 책임을 부여하는 안전관리체계 구축
- 권고10. 발전소 산업보건의 위축과 의료체계 확립
- 권고11. 안전보건 조직 체계 강화와 운영방법 개선
- 권고12. 효과적인 안전보건관리를 지원하는 석탄화력발전소 중앙 안전보건센터의 설립
- 권고13. 노동자 안전보건 활동을 위한 참여권 보장
- 권고14. 석탄 취급 관련 설비의 운영 및 관리방법 개선
- 권고15. 발암물질 등 고독성 유해화학물질의 관리방안 개선
- 권고16. 사고조사 및 위험성 평가방법 개선
- 권고17. 안전문화 증진 시스템 구축

법제도 분야

권고18. 정부의 관리감독 강화 및 실효성 확보

권고19. 산업안전보건법령 개정

권고20.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권고21.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마련

권고22. 기업의 사회적 책임 경영 강화

일하다 죽지않게! 차별받지않게! 故김용균노동자 1주기 추모 사업

고 김용균 노동자가 목숨을 잃자 문재인 대통령은 직접 안타까움을 전하며 유가족 측이 참여하는 진상규명위원회를 구성하여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할 것을 지시했다.

그러나 국무총리 훈령으로 설치된 김용균 특조위 진상조사 결과와 22개 권고안에 대해서 정부는 아무런 대답이 없다. 김용균 노동자의 장례를 앞두고 2019년 2월 5일 정부와 여당이 발표한 조속한 정규직 전환 완료와 노무비 삭감 없는 지급 역시 지금까지 실현되지 않고 있다.

공공운수노조 발전 비정규직 연대회의는 지난 11월11일 광화문광장에서 위험의 외주화 금지! 김용균 특조위 권고안 이행! 비정규직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고 김용균 노동자 추모분향소를 설치하고 농성에 돌입한 상태다.

공공운수노조는 故김용균노동자 1주기를 맞아 (사)김용균재단과 함께 ‘故김용균노동자 1주기 추모위원회’를 구성했다.

추모위원회의 주요 요구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산안법 전면개정! 특조위 권고사항 이행! 발전비정규직 직접고용! 톨게이트수납원 직접고용! 자회사 말고 정규직화! 모든 노동자에게 노조할 권리 보장! 탄력근로제-특별연장근로제 고무줄 노동시간 반대!” 이다.

추모기간은 12/2~12/10까지로 아래와 같이 추모사업을 진행한다.

1) 추모주간 선포 기자회견

- 일시와 장소 : 12월 2일(월) 11시 광화문광장 농성장(故김용균추모분향소)

2) 중대재해사업장 조사위원회 권고와 이행실태점검 토론회

- 일시와 장소 : 12월 3일(화) 14시 프란치스코회관

3)故김용균노동자 1주기추모대회<일하다 죽지않게! 차별받지않게! 촛불행진>

- 일시와 장소 : 12월 7일(토) 17시 종각역 사거리

4)故김용균노동자 1주기 추도식

- 일시와 장소 : 12월 8일(일) 11시 마석모란공원 묘역

5)故김용균노동자 1주기 현장추도식

- 일시와 장소 : 12월 10일(화) 13시 태안화력발전소

6) 추모문화제

- 일시와 장소 : 12/2~12/9 매일 저녁 19시 광화문광장 농성장(故김용균추모분향소)

7) 추모전시

- 일시와 장소 : 12/2~10 광화문광장 농성장(故김용균추모분향소) 주변

주 52시간제 개악 장시간 노동 강요하는 문재인 정권

고용노동부는 2019. 11. 18. 주52시간제 보완대책 중 하나로 “시행규칙 개정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를 최대한 확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구체적으로 현재 시행규칙에서 “재난 및 이에 준하는 사고 발생”시에만 특별연장근로 인가를 허용하고 있으나, 일시적인 업무량 급증 등 경영상 사유에 대해서도 특별연장근로를 활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확대하겠다는 내용이다.

일시적인 업무량 급증 등 경영상 사유에 대해서도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할 경우 ① 주 52시간제, 1주 연장근로 한도 12시간 원칙이 무너지고, ② 사용자의 편의에 따라 임의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위험성 있다.

일시적 업무량 급증은 어느 업종, 어느 사업장이나 겪는 상황이다. 이를 반영한 시행령 개정은 정부가 이에 대한 통제권을 쥐고 자의적인 행정을 남발하겠다는 것에 불과하다. 일시적 업무량 급증은 원청 납품기한 일방 단축요구나 긴급 발주 등 원하청 구조문제다.

문재인 정부는 원청 갑질이나 불공정한 원하청 구조문제 해결에는 관심 없이, 사업장 규모가 작을수록, 임금이 적고 보호해줄 노동조합 힘이 약할수록 더 많은 희생과 고통을 전가하려 하고 있다.

또한 행정규칙에 불과한 고용노동부령(시행규칙) 개정을 통하여 근로조건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노동시간 관련 규율을 근본적으로 변동시키는 것은 법체계상으로도 타당하지 않다.

정부는 사용자의 개악 요구를 청부 받아 국회 법 개악을 시도해보고, 안 되면 시행규칙을 개악하려 하고 있다. 정부와 국회의 노동개악 시도에 맞선 투쟁이 필요하다.